현장 중심! 민생 중심!
더불어 행복한 성북

보건복지위원회
소 관

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sb 성북

성 북 구
(건강관리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80

제출년월일 : 2023년 9월 27일
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구민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예방접종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여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형평성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현행: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
- 개정: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

나. 조례의 목적, 예방접종의 종류, 지원대상, 예방접종 지원 횟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4조)

다. 지원 절차, 예방접종 위탁, 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7조)

라. 환수조치, 피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,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: 2024년 본예산 편성 예정

다. 합　　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: 2023. 8. 17. ~ 2023. 9. 6.(20일간)

- 입법예고 결과: 의견없음

2)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: 첨부

3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

- 인권영향평가 결과: 원안동의
-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- 아동영향평가 결과: 원안동의

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예방접종의 종류)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인플루엔자
2. 대상포진
3.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

제3조(지원 대상)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인플루엔자: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성북구”라 한다)에

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(50세 이상)

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
라.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2. 대상포진: 접종일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(65세 이상)

나.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③ 제2조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 대상 질병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으로 전환될 경우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4조(예방접종의 지원 횟수)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.

1. 인플루엔자: 연 1회

2. 대상포진: 평생 1회

제5조(지원 절차) ① 제3조에 따른 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.

② 접종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,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.

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, 「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」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

보관한다.

제6조(예방접종업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④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「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한다.

제7조(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) ① 제6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 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.

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해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.

④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,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한다.

제8조(환수조치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.

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
2. 제4조 각 호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실시대장에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.

제9조(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)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.

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「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방접종업무 위탁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과 체결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예방접종 예진표

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아래의 질문사항을 잘 읽어보시고, 본인(법정대리인, 보호자) 확인란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성 명		주민등록번호	-	(□남 □여)
실제 생년월일		외국인 등록번호	-	(□남 □여)
전화번호	(집) (휴대전화)		체 중	kg

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사항	본인(법정대리인, 보호자) 확인 ☑
'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'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**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수집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** **■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: 필수예방접종의 다음접종 및 완료 여부,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관련 문자** **■ 개인정보 수집·이용 항목: 개인정보(민감정보, 주민등록번호 포함), 전화번호(집/휴대전화)** **■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: 5년**	
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피접종자의 예방접종 내역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불필요한 추가접종 또는 교차접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	□ 예 □ 아니오
필수예방접종의 다음접종 및 완료 여부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수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실 수 없습니다.	□ 예 □ 아니오
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와 관련된 문자를 휴대전화로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실 수 없습니다.	□ 예 □ 아니오
접 종 대 상 자 에 대 한 확 인 사 항	**본인(법정대리인, 보호자) 확인 ☑**
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? 아픈 증상을 적어주십시오. ( )	□ 예 □ 아니오
약이나 음식물(계란 포함) 혹은 백신접종으로 두드러기 또는 발진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?	□ 예 □ 아니오
과거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 일이 있습니까?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주십시오. (예방접종명:)	□ 예 □ 아니오
선천성 기형, 천식 및 폐질환, 심장질환, 신장질환, 간질환, 당뇨 및 내분비 질환, 혈액 질환으로 진찰 받거나 치료 받은 일이 있습니까?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. ( )	□ 예 □ 아니오
경련을 한적이 있거나 기타 뇌신경계 질환(길랭-바레 증후군 포함)이 있습니까?	□ 예 □ 아니오
암, 백혈병 혹은 면역계 질환이 있습니까?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. (병명 :)	□ 예 □ 아니오
최근 3개월 이내에 스테로이드제, 항암제,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?	□ 예 □ 아니오
최근 1년 동안 수혈을 받았거나 면역글로불린을 투여받은 적이 있습니까?	□ 예 □ 아니오
최근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한 일이 있습니까?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 주십시오. (예방접종명 :)	□ 예 □ 아니오
(여성) 현재 임신 중이거나 또는 다음 한 달 동안 임신할 가능성이 있습니까?	□ 예 □ 아니오
의사의 진찰결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. 본인(법정대리인, 보호자) 성명 : (서명)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: * 피접종자가 출생신고 이전의 신생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(-) 년 월 일	

의 사 예 진 결 과 (의 사 기 록 란)		확인 ☑
체온 : ℃	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였음	□
'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20~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'을 설명하였음		□
문진결과 :		
이상의 문진 및 진찰 결과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. 의사성명 : (서명)		

210㎜× 297㎜(보존용지(2종) 70g/㎡)

[별지 제2호서식]

예 방 접 종 실 시 대 장

번호	피접종자 인적사항						예방접종 실시 내용					환수조치 불가사유
	사유	일자	성명	생년 월일	주 소	연락처	접종명	백신제조 번 호	접종 일시	접종자	예 진 의사명	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**비용발생 요인**: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접종 비용을 세출예산으로 편성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○ 2024년 예산 산출내역

예산액	산출기초
387,057천원	· 대상포진 백신비 85,000원 × 3,700명 = 314,500,000원 · 대상포진 접종 시행비 19,610원 × 3,700명 = 72,557,000원

※ 백신비 및 시행비 단가는 변경 가능성 있음

※ 대상포진 예방접종 생백신 기준 : 평생 1회 접종

○ 2024년 사업 대상: 3,700명

(2023. 5월 말 기준)

구 분	전체인구	65세 이상 어르신	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	접종대상 예상인구*
성북구(명)	429,689	78,594	7,329	3,700

* 산출근거: 주민등록상 성북구로 등록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약 50.4%

○ 사업 차기연도(2025년~) 대상 인원

(단위: 명)

구 분	산출근거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
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예상인구	전년도 기준 8.5% 증가	8,628	9,361	10,157	11,020
접종 대상 도래자	해당년도 예상인구 - 전년도 예상인구	548	733	796	863
예방접종인원(a)	해당년도 도래자* 51%	280	370	400	430
미접종자(b)	전년도 접종대상 인구*10%	370	70	50	50
접종대상 인원 (a+b)	-	650	440	450	480

○ 연도별 예상 1인당 접종비

(단위: 원)

구 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
백신비	85,000	86,000	87,000	88,000	89,000
시행비	19,610	19,810	20,010	20,210	20,410
합 계	**104,610**	**105,810**	**107,010**	**108,210**	**109,410**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합계
세입	○						
	○						
	소계(a)						
세출	○ 의료및구료비	387,057	68,777	47,085	48,695	52,517	604,130
	소계(b)	387,057	68,777	47,085	48,695	52,517	604,130
□ 총 비용(a-b)		387,057	68,777	47,085	48,695	52,517	604,13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						
시비							
구비	지방세수입	387,057	68,777	47,085	48,695	52,517	604,130
	세외수입						
	지방채 등						
민간							
기타							
합계		387,057	68,777	47,085	48,695	52,517	604,130

5. 덧붙이는 의견 : 백신 단가 예측의 어려움이 있음

6. 작성자

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